

**금산진산 ~ 금산 (국지도 68 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0.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1.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국지도68호선 중 금산군 진산~금산 구간의 선형불량 및 도로폭 협소구간 개량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주민, 관광객 등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1.2 계획의 개요

가. 사업명 :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나. 위치

- 시점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 종점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다. 연장 : 10.64km

- 시설개량 = 8.34km
- 기존도로 준용 = 2.30km

라. 도로폭원 : B=10.0~11.25m

마. 설계속도 : 60km/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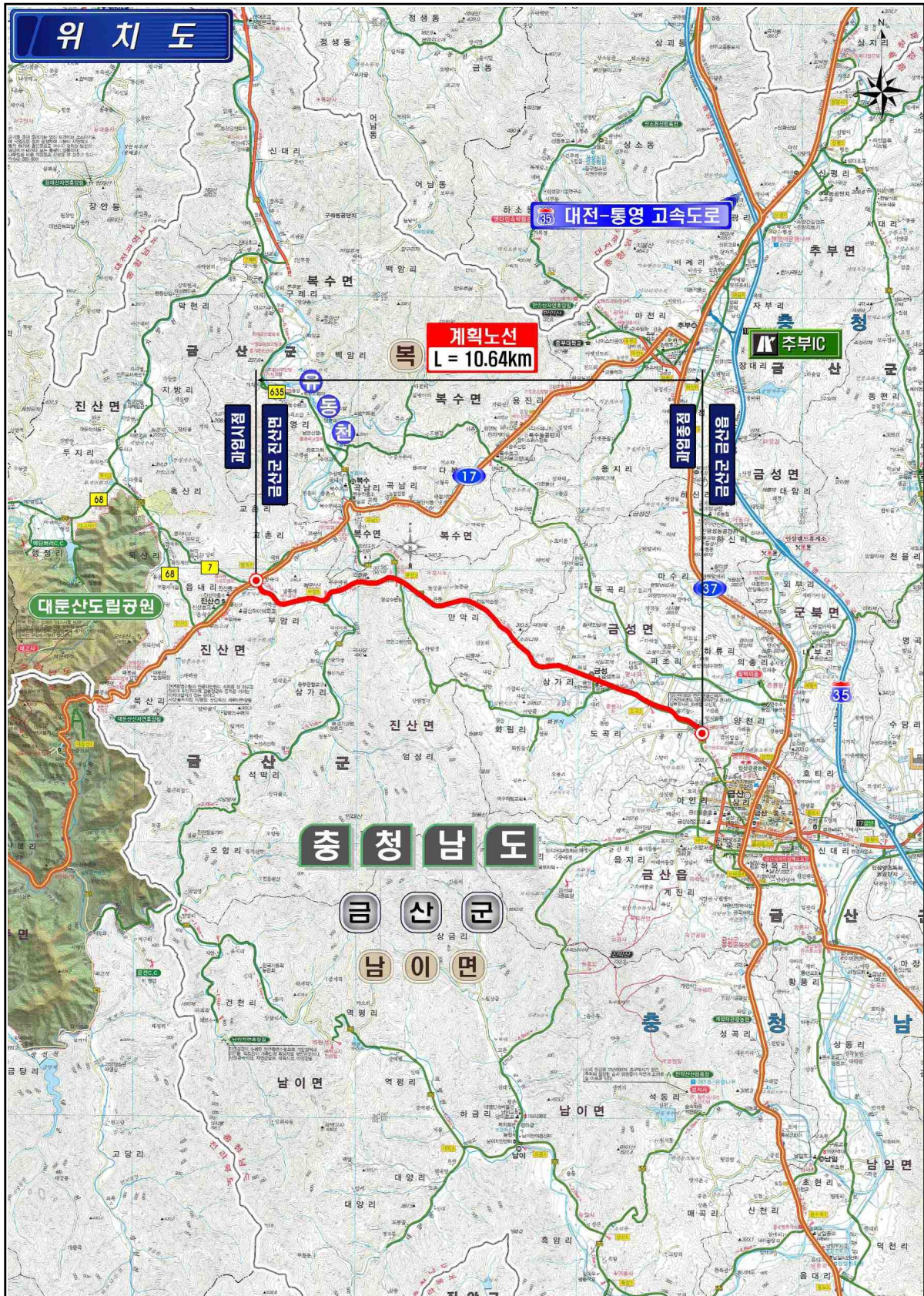
바. 사업기간 : 2020년 3월 ~ 2022년 3월

사. 사업비 : 공사비 312.0억원, 보상비 61.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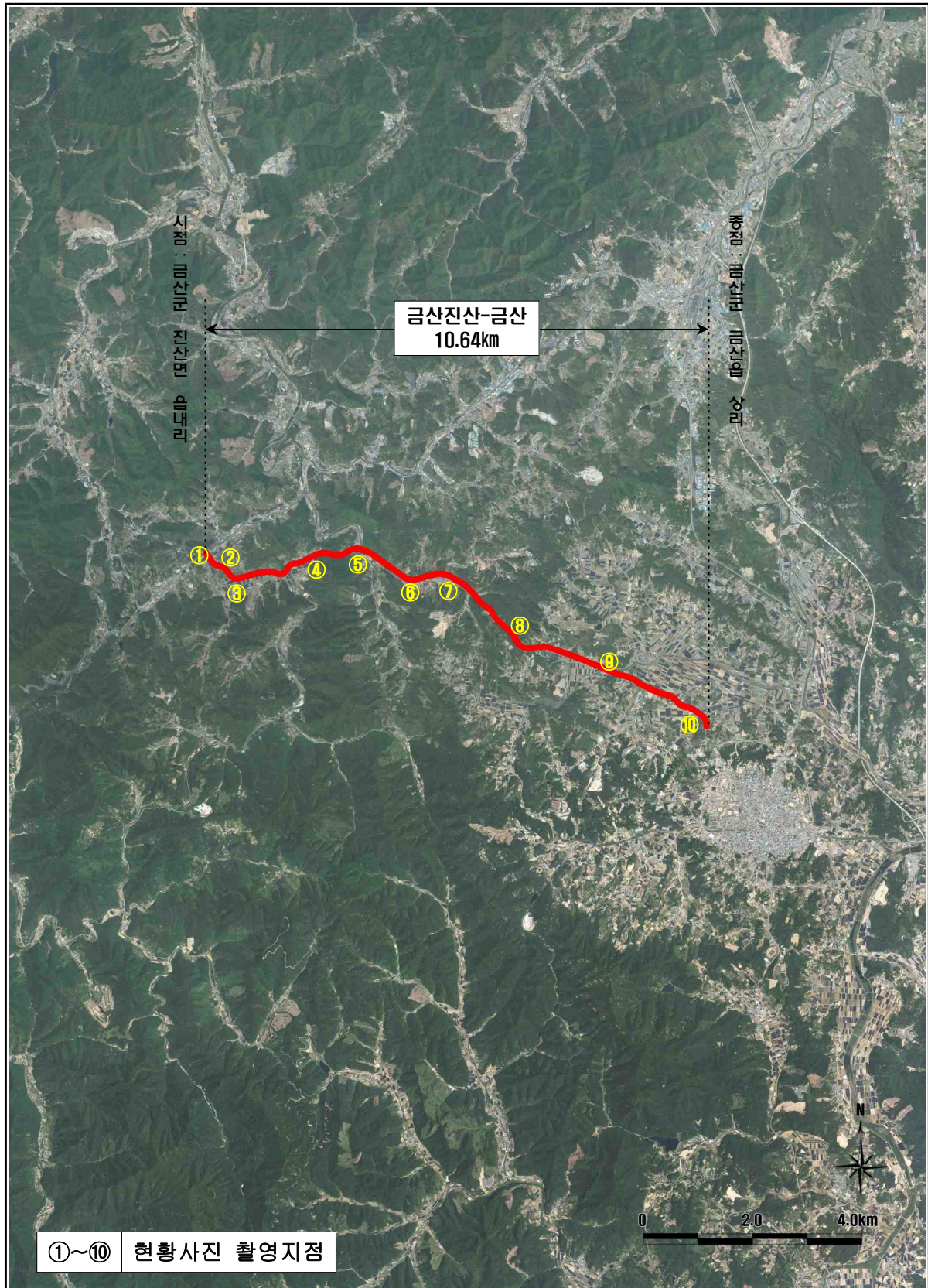
아. 사업시행자 / 승인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자. 기대효과

- 기존 선형 불량구간 및 도로폭 협소구간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 지역발전 촉진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그림 1.2-1) 계획노선 위치도



(그림 1.2-2) 계획노선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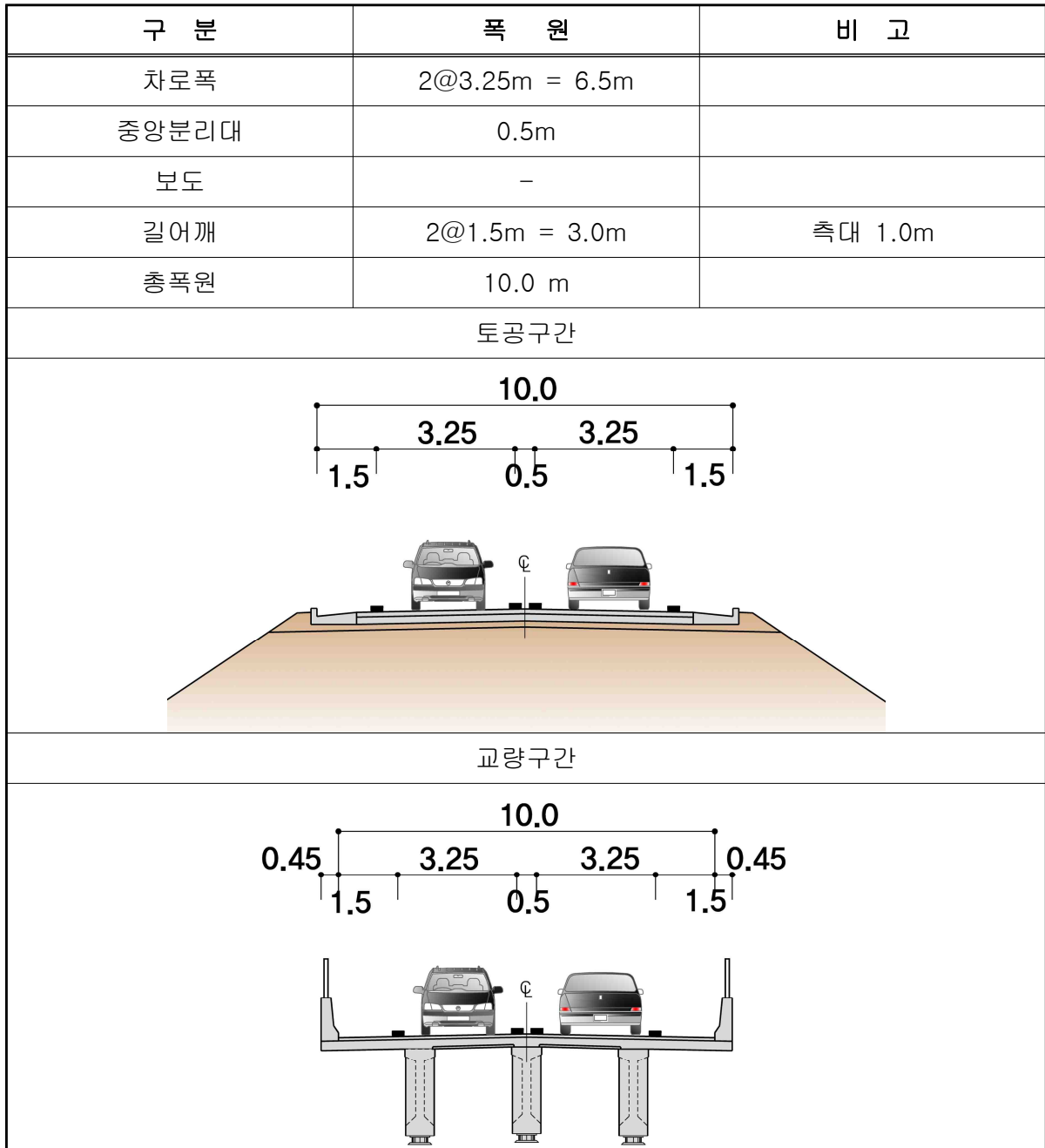


(그림 1.2-3) 계획노선 현황사진

### 1.3 계획의 주요내용

가. 도로제원

〈표 1.3-1〉 표준횡단면도



나. 주요 시설계획

- 교 량 : 5개소 / 185m

## 1.4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등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도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건설공사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행령 [별표2]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대상사업임

- 신설과 확장을 함께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 \\ = ( 2.55 / 4 ) + ( 5.79 / 10 ) = 1.22$$

주) 총연장(10.64km) = 신설(2.55km) + 확장(5.79km) + 기존도로준용(2.30km)

### <표 1.4-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마. 도로의 건설	2) 「도로법」 제2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계획노선	신설 및 확장 8.34km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 2. 대상지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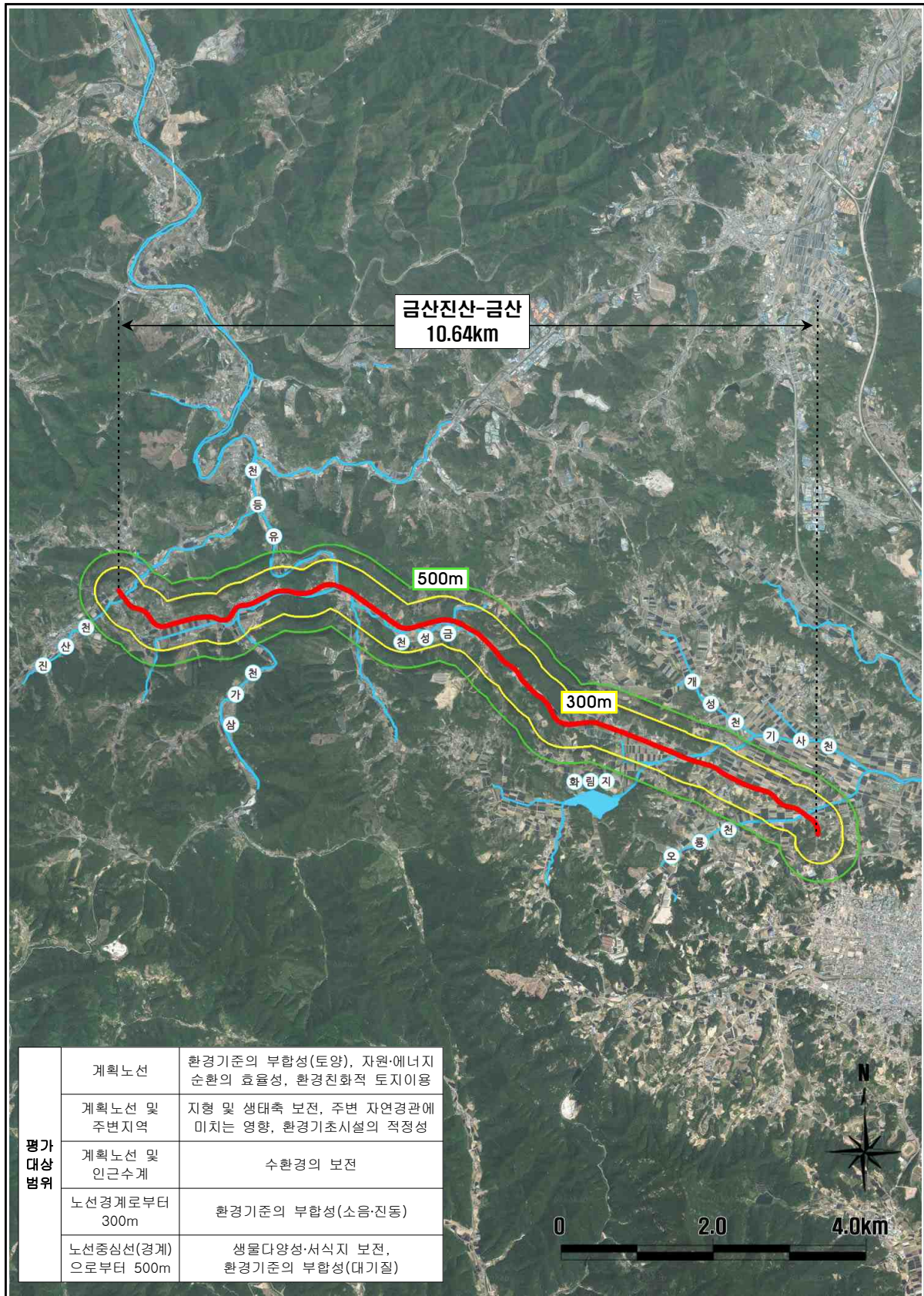
### 2.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05호), 2018.12,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

〈표 2.1-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고	
1.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및 자연환경 자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노선중심선으로부터 5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예상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공사로 인한 계획노선 및 주변 경관 변화 예상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운영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계획노선 및 인근수계	공사시 운영시	
2.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공사장비 투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운영시 통행차량 배기가스 영향 예상 지역	◦노선경계로부터 5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토양	◦공사시 폐유발생(건설장비),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지역	◦계획노선	공사시
	소음·진동	◦공사시 작업장비 및 운영시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상 지역	◦노선경계로부터 3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노선 및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장래 계획 검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공사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공사시	
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	◦계획노선	운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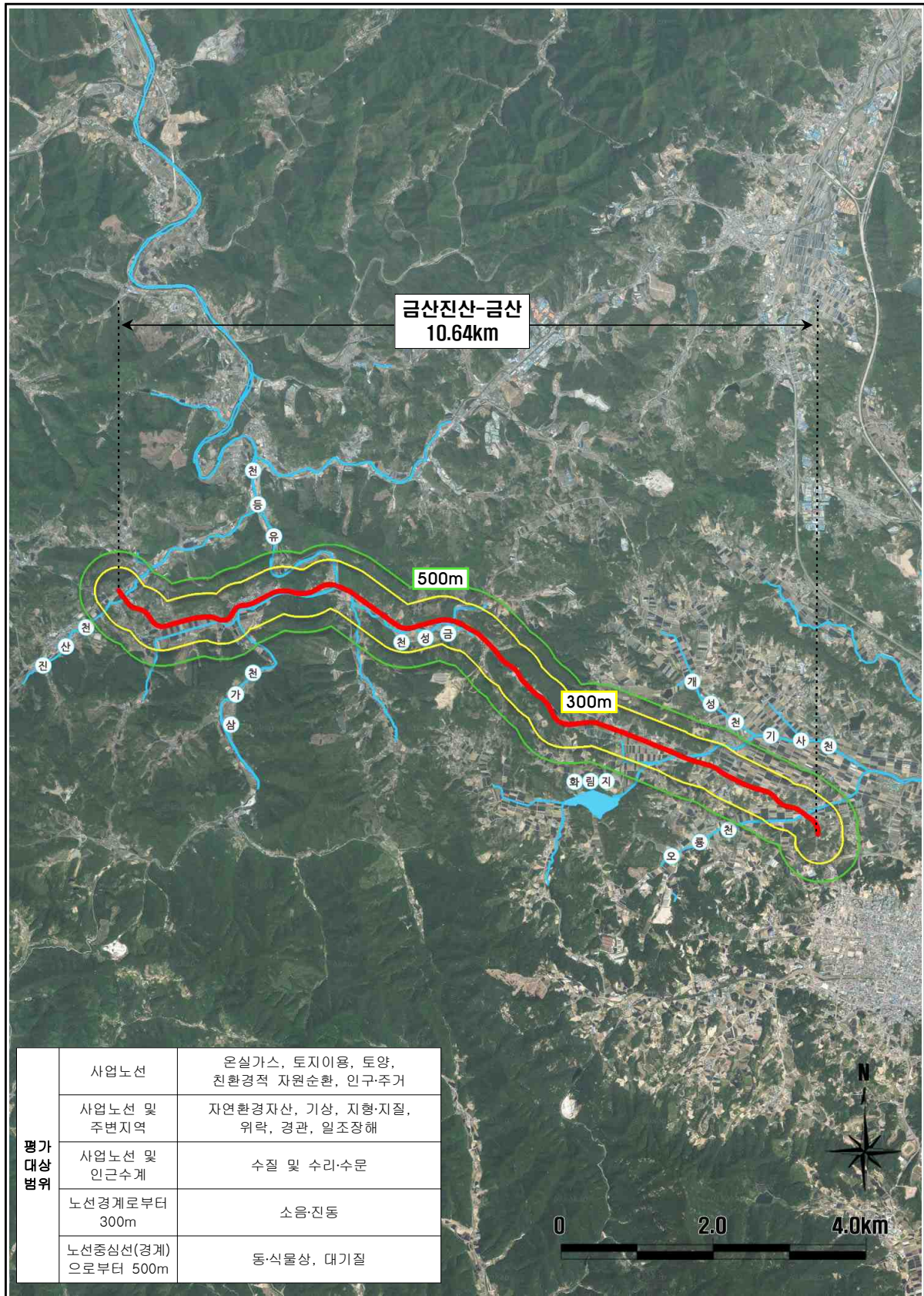
(그림 2.1-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도

## 2.2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05호), 2018.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

**<표 2.2-1>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고
1.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노선중심선으로부터 5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2. 대기환경분야			
기상	◦사업노선 및 인근지역 국지적 기상특성 분석 및 타 항목 기초자료 활용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대기질	◦공사장비 투입으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및 운영시 통행차량 배기가스 영향 예상 지역	◦노선경계로부터 5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운영시 통행차량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지역	◦사업노선	공사시 운영시
3. 수환경분야			
수질 및 수리·수문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운영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수로단절이 예상되는 사업노선 인근수계	◦사업노선 및 인근수계	공사시 운영시
4.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	◦사업노선	운영시
토양	◦공사시 공사장비 투입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노선	공사시
지형·지질	◦토공사시 토공구간의 절·성토공사에 따른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5.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노선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공사시 공사장비 및 운영시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상 지역	◦노선경계로부터 3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위락	◦사업노선 운영으로 인한 주변 위락·여가시설 영향 예상지역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경관	◦사업노선 공사로 인한 절·성토 및 구조물 설치에 의한 경관변화 예상지역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일조장해	◦사업노선 공사로 인한 절·성토 및 구조물 설치에 의한 일조변화 예상지역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6. 사회·경제환경분야			
인구·주거	◦공사시 및 운영시 인구 및 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노선	공사시 운영시



(그림 2.2-1)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도

### 3.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3.1 전략환경영향평가

##### 3.1.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설정

- 본 계획과 관련하여 평가해야 하는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규정된 개발기본계획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3.1.1-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구 분	선정	선정 및 제외사유
1)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본 계획의 상위계획과 연계성 여부 검토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대안의 설정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 계획시행으로 인한 동·식물 및 자연환경 자산의 변화 예상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 공사로 인한 계획노선 편입지역 지형형상 변화 예상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의 변화 예상
(4) 수환경의 보전	○	◦ 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수환경 영향 검토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부합성	대기질	○ ◦ 공사장비 투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운영시 통행차량 배기가스 영향 예상
	토양	○ ◦ 공사시 폐유발생(건설장비),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소음·진동	○ ◦ 공사시 작업장비 및 운영시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상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처리가능여부 검토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 공사시 폐기물 발생 예상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사업시행으로 인해 토지이용의 변화 예상

### 3.1.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토대로 평가방법을 설정함

〈표 3.1.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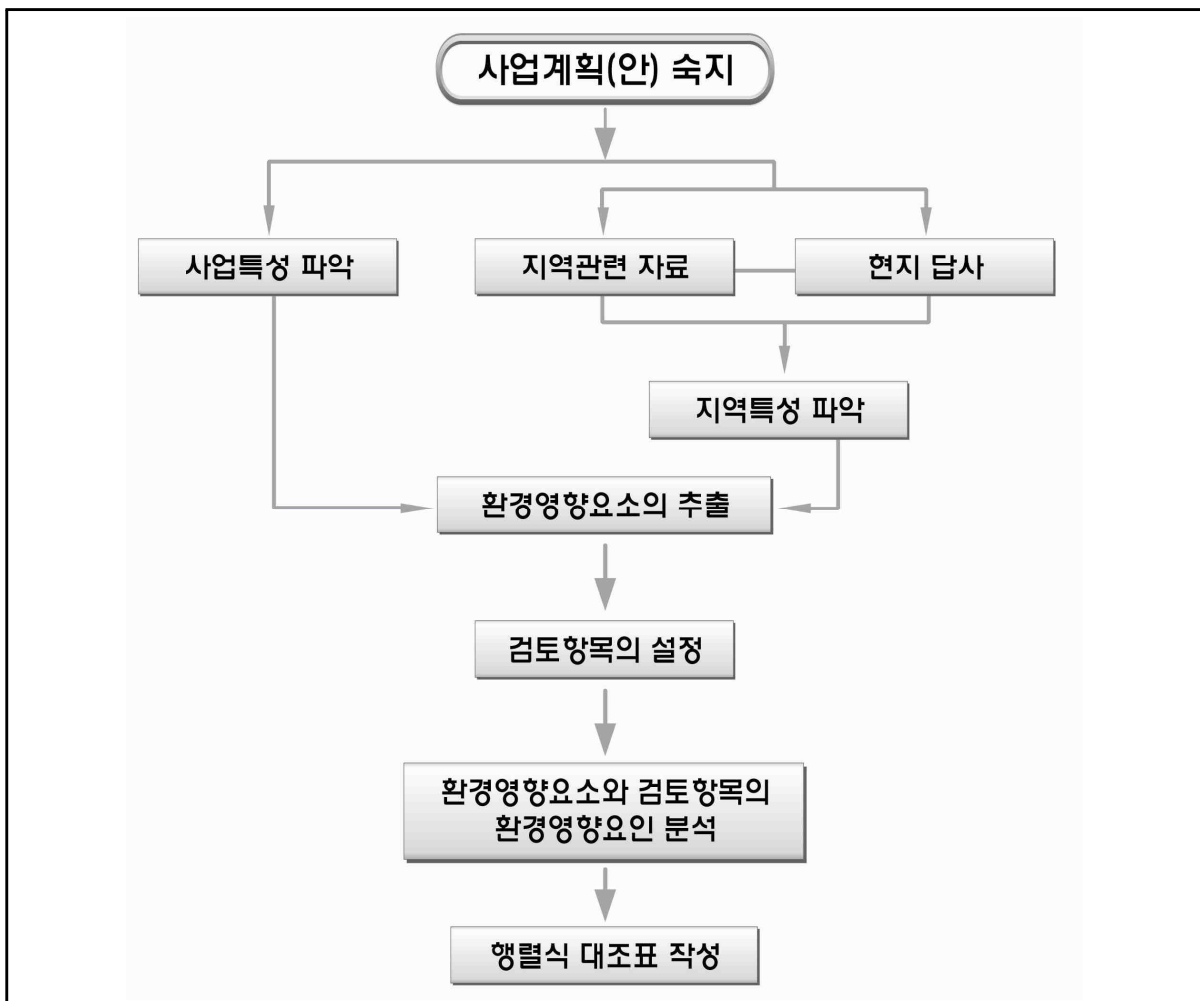
구 분		평가범위	평가방법
1)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상지 관련 행정 구역(충청남도, 금산군 등)	◦ 상위계획과 관련계획 연계성 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각 대안별 장·단점 비교를 통한 최적 대안 선정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노선중심선으로부터 500m이내	◦ 전문가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한 동·식물상 영향 예측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지형형상 및 지질변화 등에 대한 영향 예측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변화 예측
수환경의 보전		◦ 계획노선 및 인근수계	◦ 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수환경 영향 예측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부합성	대기질	◦ 노선경계로부터 500m이내	◦ AERMOD를 이용한 대기 오염물질 및 차량 배기가스 영향 예측
	토양	◦ 계획노선	◦ 문헌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토양 오염도 현황 파악 및 영향 예측
	소음·진동	◦ 노선경계로부터 300m이내	◦ 합성소음식 및 거리감쇠식 등을 적용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예측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문헌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환경기초 시설 현황 파악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노선	◦ 문헌자료 및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예측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노선	◦ 사업시행시 토지이용의 변화 예측

### 3.2 환경영향평가

#### 3.2.1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설정

##### 가. 환경영향요소 추출

-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공사시 및 운영시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함
- 환경영향요소는 당해사업의 특성과 대상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조사와 함께 환경현황을 파악한 후 사업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 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환경요소 중 중요한 요소를 추출함



(그림 3.2.1-1) 환경영향요소 추출 모식도

〈표 3.2.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구 분		환 경 영 향 요 소
공사시	노선공사	지형변형, 수목 벌채, 절토 및 성토, 발파, 토지점용 등
	건설자재	골재의 확보 및 운반, 건설기자재 운반 및 가동, 토사이용 등
	시설공사	교량공사, 배수 및 통로 공사, 포장공사 등
운영시	시설물이용	도로 및 교량, 배수로 등
	차량통행	배기가스 및 소음 발생

나. 평가항목의 설정

1) 평가대상 항목 설정

◦ 상기에서 추출된 본 사업의 환경영향요인과 연계하여 사업계획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추출한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05호, 2018.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악취·소음·진동), 2013.01, 환경부」 등을 고려하여 <표 3.2.1-2>와 같이 17개 항목을 평가대상 항목으로 설정함

〈표 3.2.1-2〉 평가대상 항목 설정

구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중 평가항목		사업노선 평가대상 항목 설정	
	항목수	평가항목	항목수	평가항목
자연생태환경	2개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2개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환경	4개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3개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환경	3개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2개	수질, 수리·수문
토지환경	3개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3개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생활환경	7개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5개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	3개	인구, 주거, 산업	2개	인구, 주거
합계	22개	-	17개	-

2)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사유

- 사업계획 및 지역환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13개, 현황항목 4개, 제외항목 5개로 선정하였고, 그 사유를 <표 3.2.1-3>에 제시함

<표 3.2.1-3>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사유

구분		평가항목	현황항목	제외항목	선정(제외) 사유
		13개	4개	5개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 식생훼손 정도 및 이식수목 파악, 육상동물상 변화, 주요종(법적보호종 및 천연기념물 등) 서식여부 및 보전대책
	자연환경 자산	○	-	-	◦ 각종 보전·보호지역 분포현황 및 영향유무 파악
대 기 환 경	기상	-	○	-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인근 기상대자료)
	대기질	○	-	-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차량통행에 의한 배기가스 오염물질 발생
	악취	-	-	○	◦ 계획노선 주변지역에 악취유발요인은 계획되지 않아 악취로 인한 영향은 미미
	온실가스	○	-	-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운영시 차량통행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수 환 경	수질 및 수리·수문	○ ○	-	-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운영시 비점 오염물질 발생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해양환경	-	-	○	◦ 사업의 특성 및 입지여건상 해양에 미치는 영향 없음
토 지 환 경	토지이용	○	-	-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 양	○	-	-	◦ 공사시 공사장비 발생 폐유,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발생
	지형·지질	○	-	-	◦ 토공구간의 절·성토공사에 따른 지형변화 및 사면 발생



〈표 3.2.1-3 계속〉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사유

구분	평가항목	현황항목	제외항목	선정(제외) 사유	
		13개	4개		5개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공사시 건설폐재 등 폐기물 발생
	소음·진동	○	-	-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진동발생 ◦ 운영시 차량통행에 의한 도로교통소음발생
	위락	-	○	-	◦ 주변 위락·여가시설 현황 및 사업노선운영에 따른 영향
	경관	○	-	-	◦ 절·성토 및 사면발생에 의한 경관변화 예상
	위생·공중 보건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없음
	일조장해	○	-	-	◦ 성토 및 구조물에 의한 일조변화 예상
	전파장해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사회경제환경	인구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 변화 예상
	주거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 변화 예상
	산업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인 악영향 없음

다.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방법은 Leopold가 고안한 행렬식 대조표 등급설정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함
- 또한, 환경영향요소는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의 정도는 본 사업노선의 규모 및 입지여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바, 환경영향요소와 환경항목과의 관계를 대비시켜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간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함

〈표 3.2.1-4〉 행렬식 대조표 등급설정 기준

구분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구분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	악영향이 다소 있다.(보통정도)
△	개발되면 긍정적이거나, 크기는 작다.	●	악영향이 크다.

<표 3.2.1-5>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평가항목		자연생태 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일조장해	인구·주거
환경요소	공사시	지형변형	●							●							
		수목벌채	●	▲			▲	▲				▲		■			
		절토 및 성토				■		■	■	■	●					■	
		발파	▲								■		●				
		토지점용	■							■							
	건설 자재	골재 등 확보 및 운반				▲								■			
		건설기자재 운반 및 가동	■			▲	■			▲		▲	■				
		토사이동	■			■		■			▲						
		교량공사	■					■					■		▲	■	
		배수 및 통로공사						▲	▲								
	시설 공사	포장공사						▲	▲	■							
		시설통행	도로 및 교량	▲						◎				△	▲	■	◎
			배수로 및 통로	△					△	□	△						
	시설통행	배기가스발생				■	▲			▲							▲
		소음발생	▲										■				▲

### 3.2.2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토대로 평가 방법을 설정함

〈표 3.2.2-1〉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구 분	평가범위	평가방법
1.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	◦ 계획노선 중심선으로부터 500m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훼손수목발생 및 예측</li> </ul> </li> <li>◦ 동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군별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li> </ul> </li> <li>◦ 기타,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 파악과 사업 시행으로 이들중에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li> </ul>
자연환경자산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훼손여부 파악 및 보전방안 수립
2. 대기환경분야		
기상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기상대 또는 필요시 AWS 자료분석을 통해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노선경계로부터 500m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질 현황 파악</li> <li>◦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AERMOD 등 이용)</li> </ul>
온실가스	◦ 사업노선	◦ 공사시 장비가동 및 운영시 연료사용 산정 후 배출계수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3. 수환경분야		
수질 및 수리·수문	◦ 사업노선 및 인근수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수계현황 파악</li> <li>◦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발생량 예측</li> <li>◦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발생 예측, 재해(홍수 등) 영향 검토</li> <li>◦ 수로단절 여부 평가</li> </ul>

<표 3.2.2-1 계속>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구분	평가범위	평가방법
4.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사업노선	◦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파악
토양	◦사업노선	◦ 공사장비 폐유 발생시 토양오염우려 ◦ 반입토사에 의한 토양오염우려
지형·지질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사면안정성 등
5.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자원순환	◦사업노선	◦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공종별, 종류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 분리수거 및 현장 재활용방안 제시
소음·진동	◦노선경계로부터 300m이내	◦ 공사시 합성소음식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 등을 적용하여 공사장비 운영에 따른 소음 및 진동 영향 검토 ◦ 운영시 국립환경과학원식을 이용하여 이동차량에 의한 소음영향 검토
위락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주변 위락·여가시설 현황 및 운영시 영향검토
경관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정도, 조망의 변화 검토
일조장해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사업시행으로 인한 성토 및 구조물 설치에 따른 일조량 영향 검토
6. 사회·경제환경분야		
인구 및 주거	◦사업노선	◦ 사업시행에 따른 유발인구 추정 및 인구·주거 변화 등을 파악

## 4. 대안의 설정

### 4.1 대안의 종류 및 설정

#### 4.1.1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

-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대안의 종류는 계획비교, 수단·방법, 입지, 수요·공급, 시기·순서, 기타 등이 있음
- 대안은 행정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대안 종류를 선정하여 대안검토를 실시하고, 환경적 측면, 안정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설정하고자 함
- 계획비교 측면에서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와 행정계획을 수립했을 경우(Action)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며, 입지 측면에서 각 2개 대안을 구분하여 설정하였음

〈표 4.1.1-1〉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설정방법	선정	기준
계획 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설정	○	계획수립 여부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설정	-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설정	○	위치비교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4.2 대안별 비교·분석

### 4.2.1 계획비교(No Action, Action)

- 계획 미수립(No Action) 및 계획 수립(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 계획 수립(Action)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1-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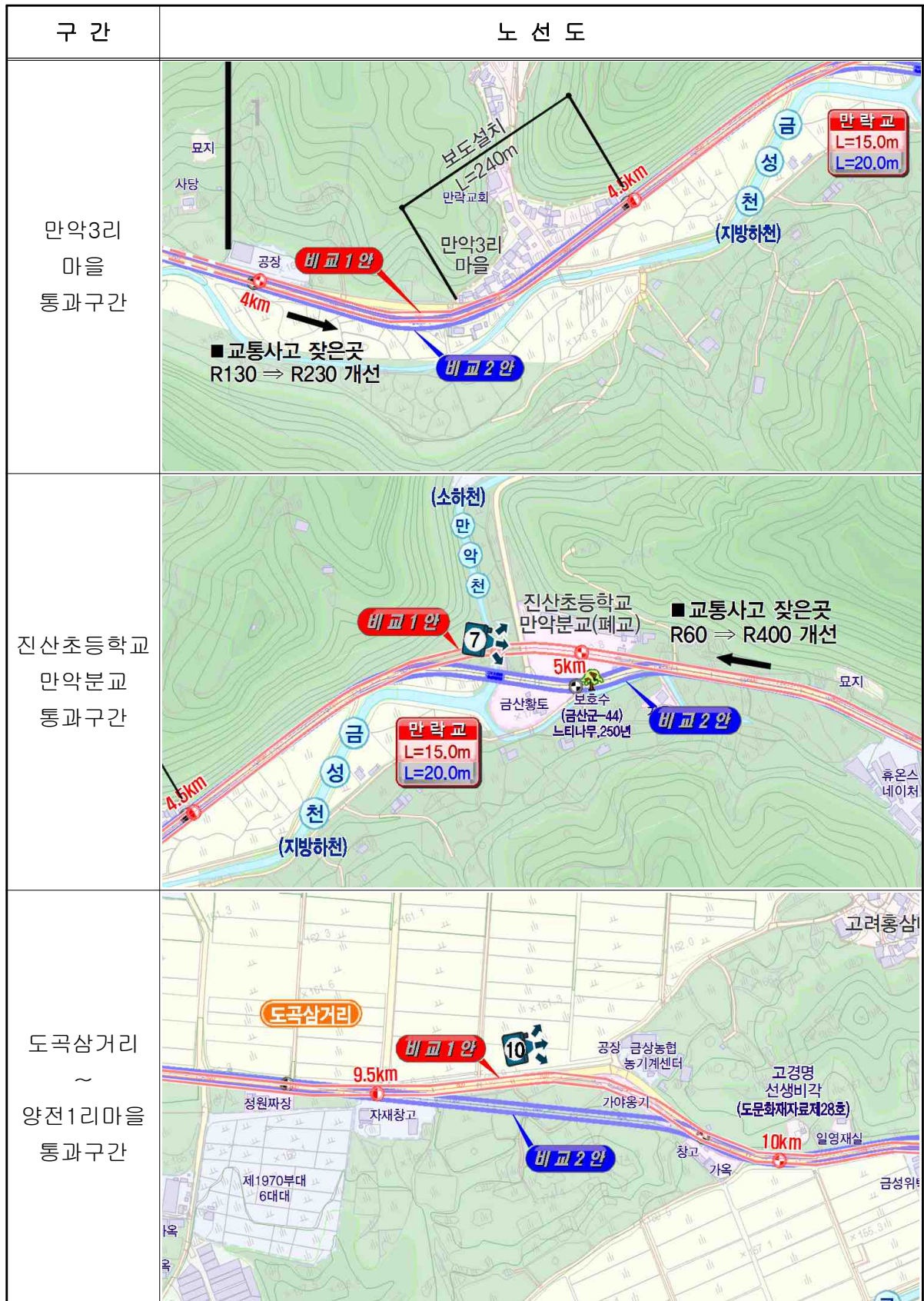
구분	계획 미수립시 (No Action)	계획 수립시 (Action)
토지이용 측면	◦ 무분별한 토지이용시 효율성 저하 또는 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	◦ 기존 국지도68호선의 선형불량 및 도로폭 협소구간 개량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 등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
각종 보호지에 미치는 영향	◦ 환경관련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	◦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에 저촉하지 않음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공사시 절·성토로 인한 불가피한 지형변화가 발생되나 저감대책 수립으로 훼손 최소화
쾌적한 생활 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생활환경의 변화가 없음	◦ 효율적인 계획노선을 선정하고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확보함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의 변화가 다소 예상되나 적정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을 구상함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미미한 생활오염이 예상되나 각종 저감방안 수립에 따라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선정사유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는 공사 시행에 의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 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 예방,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불가하므로 계획을 수립(Action)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선정		◎

4.2.2 입지

- 입지에 따른 대안으로 2개 노선(비교1안, 비교2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경제적이며, 보도 설치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비교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2-1〉 입지에 따른 비교분석

구분		비교1안	비교2안
노선개요		◦ 기존도로 최대한 활용 ◦ 마을 및 교량부 보도 설치	◦ 기존 도로 활용 보통(일부 우회계획) ◦ 마을 및 교량부 보도 미설치
연장		◦ L=10.64km(기존도로준용 2.3km)	◦ L=11.6km(기존도로준용 1.6km)
주요 공사	교량	◦ 5개소(185m) - B=11.25m, 편측 보도	◦ 5개소(170m) - B=10.0m, 보도 미포함
	터널	-	-
	토공	◦ 깎기 6.8만㎡, 쌓기 11.8만㎡	◦ 깎기 18.3만㎡, 쌓기 21.2만㎡
특징		◦ 기존 도로 활용 최대 ◦ 지장물 저축 최소 (가옥 3동, 정미소 1동, 폐교부지 편입 최대) ◦ 교량부 보도 설치 ◦ 마을통과부 보도 설치 ◦ 폐도발생 최소	◦ 기존 도로 활용 보통(일부 우회 계획) ◦ 지장물 저축 과다 (가옥 5동, 정미소 1동, 폐교부지 편입 최소, 보호수 1개소 저축) ◦ 교량부 보도 미설치 ◦ 마을통과부 보도 미설치 ◦ 폐도발생 보통
공사 비	토공	◦ 227.7억원 (감 54.0)	◦ 281.7억원
	교량	◦ 84.3억원 (증 37.0)	◦ 47.3억원
	계	◦ 312.0억원 (감 17.0)	◦ 329.0억원
보상비		◦ 61.7억원(감 27.0억원)	◦ 108.64억원
선정		◎	
검토의견		◦ 비교1안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안으로 토공량, 폐도, 지장물 발생, 환경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교량 및 마을통과부에 보도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유리 ◦ 비교2안은 기존도로를 활용하고 일부는 우회하는 안으로 폐도, 지장물 발생(보호수 1개소 포함)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환경훼손 및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	



(그림 4.2.2-1) 입지에 따른 비교·분석도



## 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본 계획은 「도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건설공사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의견을 수렴함

### 5.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제6조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8인(관계 행정기관 2인, 협의기관 1인, 주민대표 2인, 민간전문가 3인)

〈표 5.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구분		소속	성명
위원장	관계 행정기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이OO
위원	협의기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문OO
위원	민간전문가	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정OO
위원	민간전문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OO
위원	관계 행정기관	금산군청 환경자원과	김OO
위원	주민대표	금산군 진산면 부암2리	주OO
위원	주민대표	금산군 금산읍 계진리	박OO
위원	민간전문가	(사)금산앤사람들	유OO

5.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별 심의의견

심의의견 내용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이OO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량적인 예측방법과 실질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적정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현장조사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온시설 유·무에 따라 평가범위를 적정하게 설정(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생태계 단절 및 변화 최소화를 위한 검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대안

- 계획노선으로 인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별 영향예측을 실시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적 안을 선정하고, 검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계획노선으로 인한 영향권 내 정온시설을 면밀히 파악하고, 영향예측을 실시하여 환경목표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현장조사, 문헌조사, 인근사업 조사사례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 추가항목 작성이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하도록 요망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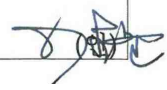
- 영향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계획노선으로 인해 환경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탐문조사 및 기존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2020. 9. .

심의위원 이



심의의견 내용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문00

**[붙임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양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금회 추진 예정인 사업(신설 및 개량 등)의 특성과 노선을 고려하여 영향범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획의 구체적인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자료(연계사업, 인구증감률, 교통량 분석 결과 등)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13.1)」 참고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금회 추진 예정인 사업(신설 및 개량 등)의 특성과 노선을 고려하여 영향범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획의 구체적인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자료(연계사업, 인구증감률, 교통량 분석 결과 등)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13.1)」 참고
2. 토지이용 구상안
  - 신설노선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기존노선의 확·포장 불가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함
3. 대안
  - 노선계획 수립 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국립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생태·녹지축, 자연경관 등의 훼손과 생태적 연결성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기존도로의 활용, 노선 후회 등을 다각도로 검토
  - 원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성토로 인한 지형·경관 변화의 최소화 방안 검토
  - 차별성 있는 대안(당초노선 확포장계획 포함)을 2개 이상 설정하여 계획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안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개발 성격, 주변토지이용 현황, 사회적 갈등 발생 여부, 입지여건, 환경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방법을 제시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일반적인 현황·저감방안 등은 생략하고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 위주로 작성하여야 함

<계 속>

심의의견 내용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문00

- 절·성토 발생구간에 대한 지형변화, 식생훼손 등의 검토를 위한 현황조사 결과 과도한 훼손,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예상 구간은 적정 저감대책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계획구간 하천(구거 등)에 교량 등 하천 내 구조물 설치를 할 경우 수질 및 수리·수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설 계획은 직·간접적인 환경영향과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개량 계획은 해당 노선 주변의 환경영향권과 토지이용 변화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야 함
  - 신설·확장 노선의 경우 단순 등급조정 등에 의한 노선과 실제로 도로 개설이 이루어질 구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설명회 시, 도표,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 문자발송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주요 이해당사자를 파악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의견 수렴은 설문조사나 간담회 등을 활용
    - ※ (적극적인 공지방법) 주민센터에 요약서 비치, 중요한 지점에 공고문 부착 등 정보 접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온라인 홍보와 함께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결과 공지 노력
  -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환경영향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해야 함
-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변경노선(신설, 확장)에 대하여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들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위치도, 위성사진, 현장사진, 토지적성평가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등급, 현재 식생현황(토지이용현황),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수계,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및 현황 등 세부 현황 자료
  -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10년간)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020. 9. 1.

심의위원 문 (인)

심의의견 내용 - 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정OO

[붙임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양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대체적으로 준비서가 타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표 6.2.1-5> 대조표의 경관요인에 대한 영향 환경요소는 절토 및 성토, 토지점용 항목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62).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경관분야 등의 대상지역 범위는 적정하게 설정됐다고 판단됩니다(pp.13~16).
2. 토지이용 구상안
  - ‘교통사고 잦은 곳’ 굴곡부의 계획노선 구상은 경제성과 환경성의 타협안으로 판단됩니다.
  - 교통안전성 증대와 경관조화에 대한 타협적 설계안 작성에 주의가 요구됩니다(pp.17~23).
3. 대안
  - -도곡3~양전1리 구간(p.52)은 ‘비교2안’이 교통안전성 증대와 기존도로 존치활용 측면에서 ‘비교1안’ 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6.1.2, 2)입지의 타당성, 가)자연환경의 보전(수환경부문제외)에 대한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6.1.3 현황조사계획 및 조사지점은 합리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pp.53~57).
  - 다만, <표 6.2.1-5> 대조표에서 경관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에 절토 및 성토, 토지점용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62).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 의견없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 의견없음.

2020. 9. 2.

심의위원 정

심의의견 내용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OO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계획노선은 대부분 기존도로를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신설로 개설되면서 절토사면 등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존도로 활용 방안, 도로구조(설계속도, 곡률반경 등)의 대안을 통해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기존도로 미활용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대안과 계획안을 상호 정량적으로 비교·평가
  - 특히, STA.1+500~STA.1+800 구간은 신설로 인해 35m 절토 사면고가 발생하므로 단구간의 설계속도 감소과 곡률반경 축소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검토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대기질 및 수질, 소음 등에서 선정한 조사지점 이외에 계획노선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
  - ※ 계획노선의 연장이 10.64km 임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3-4 지점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기존도로를 확장하면서 주거지와 매우 근접하게 계획되어 대기질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정주환경 악화가 예상되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 여부를 고지하여야 함

2020. 9 . 02.

심의위원



심의의견 내용 - 금산군청 환경자원과 김OO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도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건설공사 계획으로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이므로, 기존의 도로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05호, 2018.12.)」,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계획노선의 구상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3. 대안
  - 기존 이용 중인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설정할 것.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 및 범위·방법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련법에 따라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것.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해당없음

2020. 9 . .

심의위원 김 (인)

심의의견 내용 - 금산군 진산면 부암2리 주OO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선형불량 및 도로폭 협소구간 개량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의 자연성과 생태·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전체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규정에 따라 내용이 반영되어 수립되었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하다고 판단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전체적인 계획노선 구상안은 적정하나 계획노선 구상안 중 시점으로부터 0.75km지점(목골길 진입로)의 회전반경을 계획보다 완만하게 조정 필요
  - 시점으로부터 3.5km지점 마을 진입 교량 회전반경 조정 혹은 교량폭 조정 필요
3. 대안
  - 적정하다고 판단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과 범위, 방법 등은 적정하나 수환경 보전 중 교량신설에 따라 소하천 수위 등의 수환경 영향을 수치로 제시할 필요 있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적정하다고 판단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0. 9. . 8

심의위원 주

(인)



심의의견 내용 - 금산군 금산읍 계진리 박OO

환경영향평가협위회 심의의견서

(금산 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총괄의견

○평가항목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타당함

2.토지이용 구상안

○자연 토지에 대한 활용방양 제시  
-기존도로 철거 및 활용방양  
-매입토지 중 잔여토지 공원조성 및 주차장 활용방양

4.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가로수(벗나무) 전수조사후 이용계획수립  
-기존 가로수 리스트 작성 및 이식순서 작성  
-가식장선정 및 이용수목 선정 기준작성  
○공사구간중 1개면소재지 2개부락 소음방지 시설 제시

5.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립계획

6.기타

2020년 9월 8일

심의위원 박

(인)



심의의견 내용 - (사)금산앤사람들 유OO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국지도68호선 금산읍↔진산읍 구간은 금산에서 논산으로 가는 중요한 도로로 선형불량 및 도로폭 협소로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평가범위 및 방법, 항목별 조사내용 및 조사지점 선정은 적절 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계획노선(대상지역)은 기존 도로에서 선형개선 및 도로폭 확대가 중심사업으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지목별로 보면 임야70%, 용도지역으로 보면 비도시지역95%, 환경관련 입지 제한은 비교적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대안
  - 입지에 따른 비교분석에서 비교1안이 타당하나 도곡삼거리↔양전1리마을 구간은 비교2안이 도로직선화 및 교통안전, 저탄소에서 더 나은 방법으로 사료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항목, 평가범위 및 방법설정, 조사내용 및 조사지점 선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진산면사무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비치하여 주민의견 청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부분적으로 생태통로 또는 울타리를 시공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로드킬 및 교통사고 예방

2020. 9 . 2 .

심의위원 유



(인)